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248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호산산업 주식회사
피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3. 대한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대한모터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합병등기를 마쳤고, 2016. 2. 4. 대한모터스는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4. 위 합병으로 대한모터스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 822-6, 같은 동 822-123, 같은 동 822-124(이하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 9,024,9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5,872,410원, 지방교육세 27,074,770원, 농어촌특별세 18,049,850원 합계 360,997,030원을 신고 · 납부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모터스는 2015. 12. 4. 주식회사 경성리츠(이하 '경성리츠'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위 연산동 822-123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1억 1,000만 원(토지 140억 원, 건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성리츠는 대한모터스에 2015. 12. 4. 계약금 30억 원, 같은 달 23. 중도금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3. 4. 경성리츠로부터 잔금 102억 1,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경성리츠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3. 8.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원고가 적격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법인세법 제4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77조의2, 지방세법 제11조, 제15조,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360,997,030원은 과다하게 산출한 세액이므로, 취득세 295,566,327원, 지방교육세 23,013,554원, 농어촌특별세 18,049,85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서에 의하면 합병법인(원고)이 피합병법인(대한모터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세율의 특례(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한모터스를 합병함으로써 대한모터스가 경성리츠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계약자 지위 승계는 지방세법 제7조가 정한 취득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이 정한 적격합병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4에 따라 피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합병법인에게로 이전될 때 산출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85% 상당을 감면받거나 농어촌특별세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3.5%)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1.5%)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한모터스의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한 원고가 대한모터스를 합병한 것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착오로 취득세 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면규정 및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과납하게 된 것이므로, 과납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3년 내에 처분하였다고 보아 적격합병의 취득세 감면이나 세율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대한모터스가 이미 위 토지를 경성리츠에 처분한 상태였고, 원고는 대한모터스의 처분행위의 이행으로 잔금을 수령하고 이와 상환으로 매수인인 경성리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 후 3년 내에 처분한 것이라 볼 수도 없고,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을 준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여지도 충분하다.

3) 원고와 대한모터스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조세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및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은 위 합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나 이는 무상취득에 해당할 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5. 합병기일 현재 대한모터스의 대차대조표, 그 부속명세서 및 기타사항에 의한 자산 부채에 관한 관리권 일체를 합병기일에 인수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6. 2. 3. 대한모터스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대한모터스는 합병으로 해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흡수합병일인 2016. 2. 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한모터스의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16. 3. 8. 착오발견을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사정이나 대한모터스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 및 세율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같다) 제57조의2 제1항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단서에서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3항 제1호는 추징사유의 하나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도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세율의 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3. 당시 대한모터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2015. 12. 31. 현재 대한모터스의 고정자산 합계액은 16,046,084,462원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11,294,714,319원으로 고정자산의 70.38%를 차지하는 사실, 원고는 2016. 3.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6. 3. 4. 경성리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16. 3. 4. 경성리츠 앞으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를 처분한 것이다(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지 대한모터스가 2015. 12. 4. 경성리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의 상대방 앞으로 그 권리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원고의 처분행위를 인정한 이상 애초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을 준용할 수도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합병등기일인 2016. 2. 3.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함으로써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세율의 특례 적용을 배제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완전모자합병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 적용을 받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가 2016. 2. 3. 당시 대한모터스의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대한모터스의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모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의 합병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단서 역시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의 합병의 경우 적용되는 것임이 그 내용상 명확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5항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이연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취득세를 그와 동일하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효민

판사 최승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가.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 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끝.